

의안번호	2217438
의 퇴 인	박용갑의원
회 답 일	2026.6.29.
추계번호	26B1403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정보 수집수단에 운송플랫폼을 추가하고, 플랫폼운송사업자,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로부터 호출건수, 호출요금, 배차시간 등 플랫폼 영업정보를 제출받아 수집·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2억 4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안 제13조 (택시 운행정보의 관리)	245	-	-	-	-	245	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(TIMs) 개선을 전제로 추산한 결과로, 향후 정보 수집항목, 데이터 연계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
1	안 제6조 (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)	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(제2항) 9. 운송플랫폼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7호의 운송 플랫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2	안 제13조 (택시 운행 정보의 관리)	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「교통안전법」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 및 <u>운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·관리하는 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“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 (제1항)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자, 같은 법 제49조의10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같은 법 제49조의19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사업자별 호출건수, 호출요금, 배차시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의 제출을 요청 받은 해당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(제4항)	재량규정 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6조 (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)	—	·(미대상)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, 운송플랫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재정소요는 안 제13조에서 추계하므로 추계에서 제외함
2	안 제13조 (택시 운행정보의 관리)	○	·(추계)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정보 수집 수단에 운송플랫폼을 추가하고, 플랫폼운송사업자,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로부터 호출건수, 호출요금, 배차시간 등 플랫폼 영업정보를 제출받아 수집·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으로, 현행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(Taxi Ope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, TIMS)을 개선하여 해당 정보를 수집·관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정보 수집 수단에 운송플랫폼을 추가하고, 플랫폼운송사업자,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영업정보인 호출건수, 호출요금, 배차시간 등을 수집·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으로,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추산함
- (물량 및 단가) 현행 TIMS는 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(DTG) 기반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른 플랫폼 영업정보(호출건수, 호출요금, 배차시간 등)를 수집·관리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사업자와의 정보 연계서버 및 통신 장비 구축, 플랫폼 영업정보 수집·통계처리 기능 개발 등이 필요함
 -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따른 플랫폼 영업정보인 호출건수, 호출요금, 배차시간 등은 현행 TIMS의 수집항목과 달라 별도의 수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
 - 2026년 3월 기준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운송사업자(Type1) 7개사, 플랫폼가맹사업자(Type2) 16개사, 플랫폼중개사업자(Type3) 12개사로 총 35개사가 운영 중으로, 각 사업자와 개별적인 데이터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
 - 또한 안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고, 수집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식별처리 및 통계처리 기능을 반영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 -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운송플랫폼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비용은 정보 연계서버 및 통신장비 구매 170백만원, 플랫폼 영업정보 수집·통계처리 기능 개발 75백만원 등 총 245백만원으로 추산됨

[표 2]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(TIMs) 플랫폼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비 상세내역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주요 내용	소요비용
정보 연계서버 및 통신장비 구매	플랫폼사업자별 데이터 연계체계 구축	170
기능개발비	플랫폼 영업정보 수집·통계처리 기능 개발	75
합계		245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(추계결과)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정보 수집수단에 운송플랫폼을 추가하고, 플랫폼운송사업자,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로부터 호출건수, 호출요금, 배차시간 등 플랫폼 영업정보를 제출받아 수집·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4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운송플랫폼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비용	245	-	-	-	-	245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(TIMs) 개선을 전제로 추산한 결과로, 향후 정보 수집항목, 데이터 연계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현행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(TIMs) 개선을 전제로 추산한 결과로, 향후 정보 수집항목, 데이터 연계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